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재무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4년 6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,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을 생략한 규정 삭제
(안 제4조제2항제4호)
- 나.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 변경(안 제16조)
- 다. 대부료·사용료·변상금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 하향 및 횟수 확대
(안 제33조, 제9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,
「초지법」, 「정부조직법」,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, 「서울특별시
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
 - 1) 입법예고

- 기간 : 2024. 4. 18. ~ 5. 8.(20일간)

- 방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
- 결과 : 별도 의견 없음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지 첨부

3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첨부

4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

-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- 아동영향평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 중 “밖의”를 “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6조 중 “따르되”를 “따르며,”로, “기부채납일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”을 “사용허가를 받은 날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관리책임 공무원”을 “재산관리관”으로 한다.

제25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”으로 한다.

제2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「초지법」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
제31조제4항 본문 중 “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32조 중 “감액율”을 “감액률”로 한다.

제33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1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
- 2.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: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
- 3. 200만원 초과 :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
- ③ 1. 50만원 이하 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
- 2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: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
- 3. 100만원 초과 :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

제36조제1항제1호 중 “지방자치단체에게”를 “지방자치단체에”로 하고,
같은 항 제7호 중 “국가보훈처장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5조제1항 중 “관리관이”를 “물품운용관이”로 한다.

제67조제2항 중 “주관부서의 장”을 “물품운용관”으로 한다.

제9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
- 2.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: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
- 3.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: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
- 4.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: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

제91조의2를 제92조의2로 하고,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1조의2(변상금 징수의 특례)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
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
변상금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</u>	<u>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</u>
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4. (생 략) 5. 그 <u>밖의</u>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 의를 생략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른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 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변 경 또는 용도폐지	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 <u>밖에</u> 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제16조(무상사용기간)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	제16조(무상사용기간) ----- -----

7조에 <u>따르되</u> 그 기산일은 <u>기부 채납일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</u> 기준으로 한다.	--- <u>따르며</u> , ----- <u>사용 허가를 받은 날</u> ----- ----- -----.
제17조(관리) (조제목 개정 2013. 3.28) <u>관리책임 공무원</u> 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·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.	제17조(관리) ----- --- <u>재산관리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
제25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 운영자(이하 “외국인투자기업 등”이라 한다)라 함은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, <u>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</u>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.	제25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</u> ----- -----.
제27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⑥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7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「초지법」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<u>1000분의 10으로 한다</u>
제31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 ① ~ ③ (생략)	제31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0조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」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. 다만,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.

⑤·⑥ (생략)

제32조(대부료등에 관한 특례)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.

제33조(대부료의 납기) ① (생략)

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: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
2. 200만원 초과 : 12개월 이내

④ -----

----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-----
----- . -----

----- 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대부료등에 관한 특례) --

----- 감액
를-----.

제33조(대부료의 납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
2.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:

6회 범위에서 분납

③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
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
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
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
호와 같다.

1. 50만원 이하 : 3개월 이내 2
회 범위에서 분납

2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:
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
납

3. 100만원 초과 : 9개월 이내 6
회 범위에서 분납

④ (생략)

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
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
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
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
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
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
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
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

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
납

3. 200만원 초과 : 12개월 이내
12회 범위에서 분납

③ -----

-----.

1. 50만원 이하 : 6개월 이내 3
회 범위에서 분납

2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:
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
납

3. 100만원 초과 : 12개월 이내
12회 범위에서 분납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-----

하게 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

2. ~ 6. (생략)

7. 성북구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

8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제65조(물품매입 요구의 심사) ① 관리관이 제64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67조(기증품의 취득) ① (생략)

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----.

1. -----

----- 지
방자치단체에 -----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
-- 국가보훈부장관-----

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65조(물품매입 요구의 심사) ① 물품운용관이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7조(기증품의 취득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물품운용관-----

-----.

③・④ (생략) 제91조(변상금의 분할납부) (조제 목 개정 2013.12.31) ① 영 제81 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: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.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: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3. 300만원 초과 : 3년 이내 12 회 범위에서 분납 4. (삭제 2013.3.28.) ②・③ (생략) <신설> 제91조의2 (생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 제91조(변상금의 분할납부) (조제 목 개정 2013.12.31) ① ----- ----- ----- --- 1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 납 2.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: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.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: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4.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: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제91조의2(변상금 징수의 특례)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 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 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 식에 따라 변상금징수유예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제92조의2 (현행 제91조의2와 같 음)
--	--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우리 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로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

4. 작성자

기획재정국 재무과장 우경죽